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2802
-----------	------

2025년 6월 18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김지향 의원 외18명

나. 제안일자 : 2025년 5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지향 의원)

가. 제안이유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증진계획의 시행 의무를 명시하여 사업의 실행 의지를 강화하고자 함.
-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과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을 추가하는 한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실태조사의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반영을 의무화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연계 체계 구축 현황 및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함(안 제7조 제2의2, 5의2 신설).
-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의무화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6. 3. ~ 2025. 6. 7.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이동편의증진계획 반영)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 있는 주요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동 조 례에 따라 수립하는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
- (실태조사) 실태조사 항목으로 ①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체 계 구축 현황 및 ②법 17조에 따른 교통사업자의 교통이용편 의서비스의 제공현황 추가 /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한 차례는 전수조사하여야 함
- (시행계획의 시행)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뿐 아니라 ‘시행’ 의 의무 규정

1) 교통정책과-9003(2025. 6. 9.)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시장의 시행 의무와 관련 실태조사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서울시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시행 의무(안 제5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7조2)에서 특별시장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5조3)에서 시장이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시행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동 개정조례안은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한 시장의 실행 의무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법 제4조4)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또한, 도로 및 교통계획 변경 등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실태조사 관련(안 제7조)

- 현행 조례 제7조5)에서는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필요한 실태조사 기초자료에 대한 각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법 제25조6)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 사항 중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과 교통약자법 제17조제1항7)에 따

-
-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5)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에 대한 조사는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조례개정안 제7조제1항에서 이를 새로이 추가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동 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은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5년마다 한차례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교통약자법 제25조제3항⁸⁾은 실태조사에 대한 시기·방법 등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다 할 것임

■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안 제8조)

- 동 개정조례안 제8조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실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뿐만 아니라 시행 의무도 함께 추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실태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가하여 이동편의증진계획 이행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증진계획·실태조사·시행계획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0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김지향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송경택,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허 훈, 황철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증진계획의 시행 의무를 명시하여 사업의 실행 의지를 강화하고자 함.
-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과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을 추가하는 한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실태조사의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반영을 의무화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나.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연계 체계 구축 현황 및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함(안 제7조 제2의2, 5의2 신설).
- 다.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의무화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을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5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u><신 설></u></p> <p>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3. ~ 5. (생략)</p> <p><u><신 설></u></p>	<p>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 ----- ----- ----- 수립·시행-----.</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u></p> <p>제7조(실태조사) ①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2의2. <u>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u></p> <p>3. ~ 5. (현행과 같음)</p> <p>5의2. <u>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u></p>

6.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실태조사)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실태조사)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7조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여 사업의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다만, 참고자료로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을 첨부함(붙임1)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붙임 1]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1 기본 현황

사업개요

회 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기간 2022.03 ~ 2022.12		
사업내용	○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향과 추진과제를 정립하고, 시민 모두가 편리한 보편적 교통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업비 (당해년도)	150,000천원	(국비)	(서비)15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김인숙 02-2133-2410	손형권 02-2133-2412	김태림 02-2133-2416

※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예산 설명

예산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2021예산액 (A)	2022예산액 (B)	증감 (B-A)	(B-A)*100/A
				(x-)
계	(x-) 0	(x-) 150,000	(x-) 150,000	(x-) 100
연구용역비	(x-) 0	(x-) 150,000	(x-) 150,000	(x-) 100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2년 예산내역		
연구용역비	○ 종합계획 용역비	=	150,000천원

과목구분	2022년 예산내역
	150,000,000원

3 사업 설명

□ 사업목적

-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향과 추진과제를 정립하고, 시민 모두가 편리한 보편적 교통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사업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3월~12월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보행정책과
- 추진방법 : 학술용역 수행
- 사업의 주요내용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이용현황 조사·분석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분석
 - 교통약자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계획 수립
 - 투자비용 산출 및 재원조달 방안 수립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150,000	
방침 수립	2022 01~2022 01		
용역 수행	2022 03~2022 12	150,000	학술용역 수행